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 고 순 서

1 결산안 심사 개요 ---- 1

가. 심사경과 ---- 1

나. 결산의 의의 ---- 1

다. 관련 법령 ---- 2

2 2021회계연도 결산 현황 ---- 3

가. 세입결산 현황 ---- 3

나. 세출결산 현황 ---- 7

3 주요 심사사항 ---- 10

가. 순세계잉여금 발생 ---- 10

나.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 11

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 ---- 11

라. 예비비 지출 현황 ---- 12

마. 예산 이월 현황 ---- 16

4 심사결과 ---- 17

1 결산안 심사 개요

가. 심사경과

○ 제 출 자 : 화성시장(회계과장)

○ 제 출 일 : 2022. 09. 02.(금)

○ 회 부 일 : 2022. 09. 15.(목)

※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 2022. 09. 15.(목) ~ 09. 16.(금) - 운영위원회 및 각 상임위원회**(집행부 원안 승인)**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경과

·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09. 19.)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2022. 09. 20.)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나. 결산의 의의

○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단계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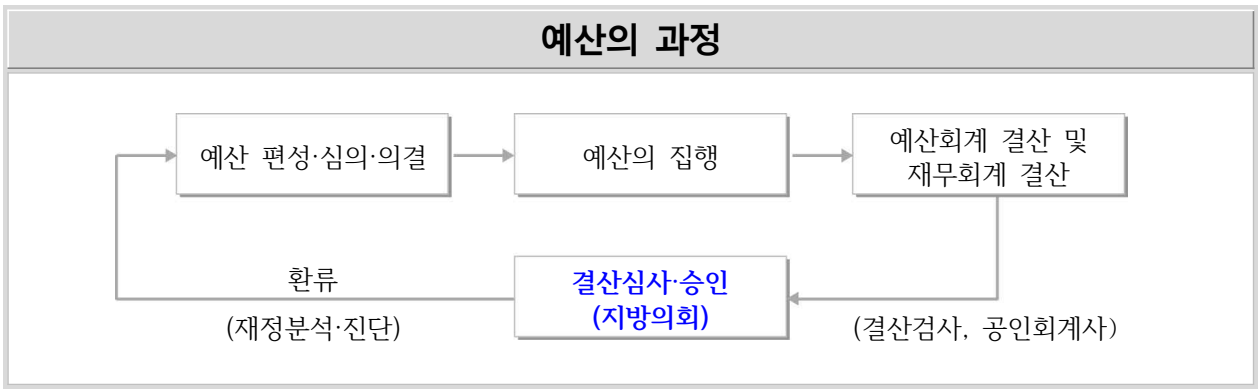

○ 결산심사·승인은 심의·의결된 예산대로, 즉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수단

○ 결산은 예산과의 괴리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음

【결산업무 처리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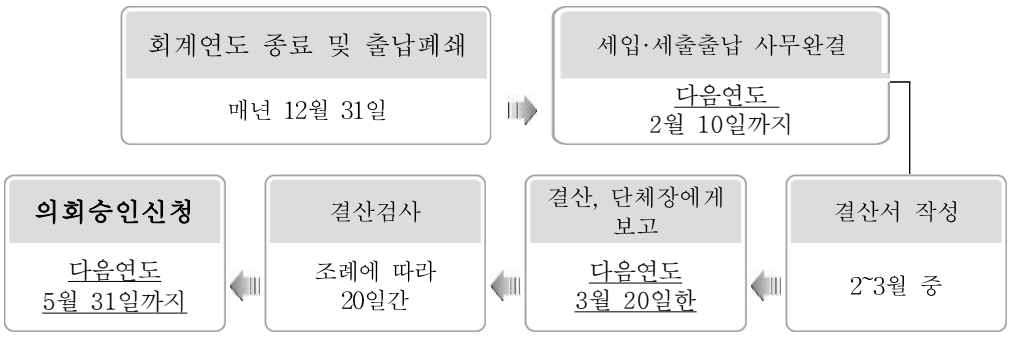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2조(결산승인)에 따라 지방의회의 결산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함.

○ 결산승인은 집행결과가 정당할 경우, 예산집행책임을 해제하는 법적 효과가 있음[1)]

다.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 - 결산 승인 근거 법령

제150조(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결산의 심사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지방의회는 본회의 의결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기업의 경우 결산은 영업기간 동안 기업의 재정상태와 경영성과를 명확하게 나타내는 절차로 대단히 중요시 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적 효과는 없지만 예산에 대한 집행부의 책임을 해제시켜주는 정치적 역할을 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 - 예비비 승인 근거 법령

제144조(예비비) ①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②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제3항 - 지방공기업 결산 승인 근거 법령

제35조(결산) ①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의 말일을 기준으로 모든 장부를 마감하여 결산을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지방직영기업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를 해당 연도의 사업보고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2021회계연도 결산 현황

가. 세입결산 현황

○ 세입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총 계	**3,808,204**	**4,141,682**	**3,980,931**	**12,513**	**148,238**	**96.1**
일반회계	3,136,603	3,428,752	3,284,702	12,247	131,803	95.8
특별회계	671,601	712,930	696,229	266	16,435	97.7

・2021회계연도 세입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조 8,082억원, 징수결정액은 4조 1,417억원으로,
- 실제로는 3조 9,80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125억원은 결손처분하였음

○ 일반회계 세입 현황

・일반회계 세입은 자치단체의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자치단체의 조세수입과 국・도비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며,

・전체 세입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그 비중이 높으므로, 일반회계 세수를 정확히 산정하고 징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총 계	**3,136,603**	**3,428,752**	**3,284,702**	**12,247**	**131,803**	**95.8**
지방세	1,178,410	1,331,848	1,265,965	10,674	55,209	95.1
세외수입	196,324	285,213	207,047	1,573	76,592	72.6
지방교부세	28,333	29,141	29,141	-	-	100.0
조정교부금	251,003	300,822	300,822	-	-	100.0
보조금	1,011,007	1,011,225	1,011,225	-	-	100.0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	471,526	470,503	470,502	-	-	100.0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3조 1,366억원, 징수결정액은 3조 4,288억원으로,
- 실제로는 3조 2,84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징수율 95.8%)**
- 122억원은 결손처분하였음.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2017년	5년평균
예산현액	3,136,603	3,231,972	2,723,273	2,433,724	2,139,631	2,733,041
징수결정액	3,428,752	3,401,915	3,020,565	2,659,422	2,362,225	2,974,576
실제수납액	3,284,702	3,252,951	2,871,805	2,541,158	2,255,183	2,841,160
결손처분	12,247	7,910	6,739	9,828	14,668	10,278
미수납액	131,803	141,054	142,020	108,435	92,374	123,137
징수율	**95.8%**	**95.6%**	**95.1%**	**95.6%**	**95.5%**	**95.5%**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징수율이 5년 평균 95.5%로 안정적인 세출재원확보가 이루어지고 있음..
- 결손처분의 5년 평균액이 102억원, 미수납액도 1,231억원에 달해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방안 마련이 요구됨.

○ 특별회계 세입 현황

・특별회계는 특정자금이나 특정 세입・세출로서 일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하는 예산으로,

・2021회계연도 기준, 화성시의 특별회계는 2개의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10개의 기타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음.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총 계	**671,601**	**712,930**	**696,229**	**266**	**16,435**	**97.7**
공기업 특별회계	**357,756**	**379,687**	**374,360**	**76**	**5,251**	**98.6**
상수도	216,753	228,965	225,037	56	3,872	98.3
하수도	141,004	150,722	149,322	20	1,379	99.1
기타 특별회계	**313,845**	**333,243**	**321,870**	**189**	**11,184**	**96.6**
폐수종말 처리시설	909	1,053	1,006	-	47	95.5
폐기물 처리시설	195,229	197,347	197,347	-	-	100.0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738	739	739	-	-	100.0
화성함백산 추모공원	38,404	40,319	40,224	-	95	99.8
도시재생	17,634	17,645	17,645	-	-	100.0
교통사업	46,946	60,030	48,799	189	11,042	81.3
주민소득 지원사업	4,173	6,132	6,132	-	-	100.0
대지보상 사업	1,324	1,324	1,324	-	-	100.0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4,610	4,699	4,699	-	-	100.0
의료보호 기금	3,877	3,956	3,956	-	-	100.0

・2021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 현황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은 6,716억원, 징수결정액은 7,129억원으로,
- 실제로는 6,962억원을 수납하였음. **(징수율 97.7%)**
- 교통사업특별회계 징수율이 타 사업 특별회계에 비해 저조함. 안정적인 세출확보를 위해 근본적인 대응마련이 요구됨.

나. 세출결산 현황

○ 세출 총괄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총 계	3,808,204	3,163,854	398,909	22,284	223,235	83.1
일반회계	3,136,603	2,670,170	327,275	21,997	117,239	85.1
특별회계	671,601	493,684	71,634	287	105,996	73.5

・2021회계연도 세출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3조 8,082억원 중, 3조 1,639억원을 지출 **(집행률 83.1%)**
- 3,989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232억원은 불용처리됨.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총 계	**3,136,603**	**2,670,170**	**327,274**	**21,919**	**117,238**	**85.1**
일반공공행정	135,548	111,971	14,247	115	9,215	82.6
공공질서 및 안전	45,765	41,941	2,007	111	1,706	91.6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률(%) (B)/(A)
교육	77,820	56,937	14,127	16	6,740	73.2
문화및관광	220,689	156,096	55,891	675	8,027	70.7
환경	214,334	182,423	16,648	6,377	8,885	85.1
사회복지	1,092,274	1,054,893	20,376	7,897	9,107	96.6
보건	64,122	60,128	368	1,308	2,318	93.8
농림해양수산	332,041	256,207	47,268	3,592	24,974	77.2
산업·중소기업 및에너지	97,979	86,972	9,164	867	974	88.8
교통및물류	542,524	397,663	119,544	665	24,653	73.3
국토 및 지역개발	74,643	45,756	27,634	57	1,196	61.3
예비비	10,565	-	-	-	10,565	0.00
기타	228,296	219,182	-	237	8,877	96.0

· 일반회계의 세출 현황을 기능별로 살펴보면,

- 대체로 적절히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 교육,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등 주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산은 집행률이 저조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에 다소 위배된다고 할 수 있음.

○ 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액	집행잔액	집행률(%) (B)/(A)
총 계	671,601	493,684	71,634	287	105,996	73.5
공기업 특별회계	**357,756**	**209,497**	**47,329**	**-**	**100,930**	**58.6**
상수도사업	216,753	124,255	15,990	-	76,508	57.3
하수도사업	141,004	85,243	31,339	-	24,422	60.5
기타특별회계	**313,845**	**284,187**	**24,305**	**287**	**5,066**	**90.6**
폐수종말 처리시설	909	714	63	-	132	78.5
폐기물 처리시설	195,229	189,680	5,280	-	269	97.2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	738	77	-	-	662	10.4
화성함백산추모공원	38,404	36,634	1,385	-	385	95.4
도시재생	17,634	5,869	11,517	6	241	33.3
교통사업	46,946	40,467	5,482	11	987	86.2
주민소득 지원사업	4,173	2,659	-	-	1,514	63.7
대지보상 사업	1,324	1,023	-	-	301	77.3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4,610	3,266	578	196	570	70.8
의료보호 기금	3,877	3,798	-	74	6	98.0

・특별회계 세출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예산현액 6,716억원 중, 4,937억원을 지출 **(집행률 73.5%)**
- 716억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060억원은 불용처리됨.

3 주요 심사사항

가. 순세계잉여금 발생(일반회계)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의 수입원별로 세입을 전망하여 세입예산에 반영하되, 세입을 줄이거나 빠뜨리지 않도록 세수추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으며,

○ 또한 지방재정법 제36조(예산의 편성)에 의거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여야 함.

○ 최근 3년간 순세계잉여금 발생현황을 검토한 결과 자체재원 집행잔액의 3년 평균액이 1,000억원에 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재정이 적재적소에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 시 재정운용에 부담이 되고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할 것임.

(단위:원)

구분 / 연도별	집행잔액		초과세입금	순세계잉여금 (집행잔액+초과세입금)
	보조금사용잔액	시비사용잔액		
2021년	16,995,212,880	**102,135,128,352**	148,098,912,348	267,229,253,580
2020년	15,545,658,827	**91,456,012,205**	20,979,183,474	127,980,854,506
2019년	13,940,092,711	**123,500,997,201**	148,532,681,777	285,973,771,689

나.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잔액 (일반회계)

○ 한 회계연도에 편성된 예산을 당초 목적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하는 것은 예산이 적절히 활용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함.

○ 집행잔액이 50억 이상 과다하게 발생한 농업정책과, 버스혁신과, 교육청소년과, 첨단교통과, 농식품유통과, 기후환경과 등의 부서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세부내역은 결산서 p.133 ~ p786 참조.

다. 예산 이용·전용 현황

★ 예산의 이용(移用) : 정책사업 간에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47조 제2항)

○ 예산의 이용은 사업의 주요내용이나 규모의 변경을 의미하므로, 이를 집행부의 재량으로 위임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용지물로 만들기 때문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2021회계연도에 세출예산을 이용하지 않았음.

★ 예산의 전용(專用) :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
(근거법령 : 지방재정법 제49조)

○ 예산 전용은 당초 예산편성 당시와는 다르게, 실제 집행하는 과정에서 계획이나 여건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용하고자 만든 제도이나,

○ 집행부에서 예산의 집행잔액을 모두 소진시키고자 기존에 없던 사업을 임의로 추가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산 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함(예산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이러한 맥락에서 2021회계연도에 전용한 내역을 검토한 결과, 총 1개 부서에서 1건의 사업을 전용하였음.

(단위:원)

부 서	세부사업명	전용금액	전용승인일	전용사유
평생학습과	평생학습 문화 확대(보조)(행사운영비)	30,000,000	2021-05-11	2021년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내용 변경
	평생학습 문화 확대(보조)(민간경상사업보조)			

※ 세부내역은 결산서 p.795 ~ 797 참조.

○ 예산전용은 제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제도로서 일부전용의 경우 예산편성 오류 또는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사업추진 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하며 예산의 성립이후 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을 수 있는 예산의 이용 및 추가경정예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라. 예비비 지출 현황

★ 예비비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한 제도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

○ 2021회계연도에는 총 16개 부서에서 23건의 예비비를 지출하였으며,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가축전염병 예방관리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로 적절히 집행하였음.

○ 일반예비비 지출내역

(단위:원)

부 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3,553,700,000	2,368,170,890	-	1,185,529,110

부 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소상공인과	소상공인과-8115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15,000,000	14,550,000	-	450,000
축산과	축산과-11776, 예법과-6739호에 따른 결정	2,507,700,000	1,633,465,000	-	874,235,000
회계과	2022. 1. 1. 정원 및 행정기구 확대 예정인바,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사무관리비 80,000천원 지출 결정	80,000,000	63,534,400	-	16,465,600
회계과	2022. 1. 1. 정원 및 행정기구 확대 예정인바, 사무공간 추가 확보에 따른 시설비 162,000천원 지출 결정	162,000,000	143,517,660	-	18,482,340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5652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350,000,000	113,500,000	-	236,500,000
문화유산과	문화유산과-4099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400,000,000	362,000,000	-	38,000,000
기후환경과	2021. 11. 소음피해지역 지정 고시 및 2022. 1. 보상 업무 개시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시설비 지출 결정	18,000,000	16,621,100	-	1,378,900
기후환경과	2021. 11. 소음피해지역 지정 고시 및 2022. 1. 보상 업무 개시에 따른 사무공간 확보 자산및물품취득비 지출 결정	21,000,000	20,982,730	-	17,270

○ 재해·재난목적예비비 지출내역

(단위:원)

부 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합 계		7,507,483,000	7,152,328,440	-	355,154,560
안전정책과	경기도 제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 추진에 따른 시비부담금 지출 결정	5,088,250,000	5,074,650,000	-	13,600,000
농식품유통과	농식품유통과-4276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7,000,000	3,000,000	-	4,000,000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5583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4,000,000	4,000,000	-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5172호 및 예산법무과-8018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87,655,000	79,583,850	-	8,071,150
회계과	회계과-10004호 및 예산법무과-6212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비용 지출	40,000,000	9,306,900	-	30,693,100
회계과	회계과-12619호 및 예산법무과-7489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40,000,000	-	-	40,000,000
회계과	회계과-10004호 및 예산법무과-6212호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설치 비용 지출	15,000,000	-	-	15,000,000

부 서	예비비 지출사유	지출결정액	지 출 액	이 월 액	집행잔액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운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매칭 시비 편성	23,930,000	20,818,580	-	3,111,420
복지정책과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운영에 따른 전산장비 임차료 시비 매칭비 편성	1,255,000	1,129,700	-	125,300
복지사업과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운영에 따른 지급수단 발행비 및 홍보비 시비 매칭비 편성	24,931,000	1,145,490	-	23,785,510
여성가족과	코로나19 외국인 확진자 심층 역학조사 및 예방접종에 투입되는 통역인력 인건비 지출 결정	94,661,000	-	-	94,661,000
아동보육과	아동보육과-11215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237,500,000	231,296,110	-	6,203,890
버스혁신과	버스혁신과-7511호 및 예법과-7081호에 따른 예비비 지출 결정	1,450,000,000	1,396,000,000	-	54,000,00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용역비 지출 결정	173,172,000	156,098,910	-	17,073,090
감염병관리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직원 여건 개선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관리용역비 지출 결정	220,129,000	175,298,900	-	44,830,100

※ 세부내역은 결산서 p.835 ~ 847p 참조.

마. 예산 이월 현황

★ 예산의 이월 :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하는 제도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명시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1항) - 사전에 의회 승인 필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

○ 사고이월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 - 사전 의회 승인 불필요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부대경비

○ 계속비이월 (지방자치법 제143조 및 지방재정법 제42조, 제50조 제3항)

- 수 년도에 걸쳐 시행하는 사업의 경비에 대하여 일괄하여 의결을 얻은 예산

○ 최근 5년간 이월사업비 현황(일반회계)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전년대비 증감액
이월총액	286,239,883,627	378,008,088,780	344,153,958,011	312,644,893,820	327,274,865,853	증 146억
명시이월	64,204,697,634	71,903,826,790	84,503,162,710	80,282,151,240	74,486,123,860	감 58억
사고이월	27,135,535,802	36,968,423,940	41,785,578,901	31,266,628,830	17,593,144,360	감 137억
계속비 이월	194,899,650,191	269,135,838,050	217,865,216,400	201,096,113,750	235,195,597,633	증 341억

(단위:원)

④ 심사결과

◯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시정요구서 별첨)
◯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